

저작권 상담관이 선정한 이달의 상담사례와 용어(‘26년 8월)

— 생성형 AI(GAI)로 만든 광고 이미지의 상업적 활용 시 저작권 문제가 없도록 유의할 사항이 있나요? —

2026. 9. 29. / 저작권상담팀 ☎ 1800-5455



본 이미지는 생성형 AI(ChatGPT)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8월 주요 상담사례

○ 생성형 AI(GAI)로 만든 광고 이미지의 상업적 활용 시 저작권 문제가 없도록 유의할 사항이 있나요?

- GAI 결과물은 기존 저작물과 유사한 표현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 여부에 따라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특히 상업적 이용, 온라인 게시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GAI 이용자가 생성한 GAI 결과물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 법적 책임을 이용자가 지게 될 수도 있다.
-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 단순히 기존 저작물과 GAI 결과물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하여 바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화풍이나 스타일이 유사한 것은 아이디어의 유사성에 불과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용자가 특정 작가의 작품을 참고하도록 직접 입력하거나 프롬프트 등을 통해 특정 작품과 유사한 결과물 생성을 유도함으로써 원본 작품의 표현과 유사한 GAI 결과물을 만들어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

- 프롬프트를 입력할 때 특정 저작물의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거나 해당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표현을 입력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특정 작가의 작품·캐릭터를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프롬프트, 만화·영화·게임 등을 각색하거나 변형하도록 하는 프롬프트, 특정 저작물의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거나 동일·유사한 결과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표현 등이 저작권 침해 위험이 높은 유형에 해당한다. 다만 위 예시된 프롬프트 입력 행위만으로 권리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며, GAI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권리 침해가 될 수 있다.
- 한편, GAI 서비스는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등을 약관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GAI 이용자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명시된 허용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특히 상업적 이용 시에는 해당 AI 서비스가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저작권 외에도 인격권, 초상권, 영업비밀 등 다양한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점 또한 유의해야 한다.

■ 참고 안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에 대한 AI-저작권 안내서(4종)을 아래와 같이 제공하고 있다.

-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
-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위 안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아래의 링크 참조)

<https://www.copyright.or.kr/notify/notice/view.do?brdctsn=55402&pageIndex=1&brdcIasscodeList=&etc2=&etc1=&searchText=&searchKeyword=&brdcIasscode=&nationcodeList=&searchTarget=ALL&nationcode=>

□ 저작권 용어 풀이

○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의 유형

-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GAI”)은 이용자가 입력한 특정한 요구(프롬프트, prompt)에 따라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을 말함.
- GAI 산출물이란 인간의 지시에 따른 결과물 중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GAI 결과물을 말함.
- GAI 활용 저작물이란 “인간이 창작 과정에서 GAI를 도구로 활용하여 만들어낸 결과물로서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사례 등이 있을 수 있음.
 - ① 이용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프롬프트로 입력하여 생성된 GAI 결과물에 그 저작물의 창작성이 나타난 경우
 - ② 이용자가 GAI 산출물을 수정·증감 등 ‘추가 작업’한 부분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 ③ GAI 산출물을 선택하고 배열 또는 구성한 것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 24쪽,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2025)



* ‘챗봇’을 통해 저작권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챗봇: <https://chatbot.gov.kt-aicc.com/cIient/GCL-01-C-00000221-0001/chat.html>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저작권 상담관이 선정한 이달의 상담사례와 용어(‘26년 8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유마당(<https://gongu.copyright.or.kr/>)의 ‘(주)보이저엑스, 의왕시청소련수련관, 온글앞 의형수 시우제’ 글꼴로 작성